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교보약사자산운용(주)’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

1. 투자신탁명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					
2. 자산운용회사명	교보약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p style="color: red; margin: 0;">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 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style="color: red; margin: 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판매사명	전화번호	판매사명	전화번호	판매사명	전화번호
	교보생명보험	1588-1001	삼성생명보험	1588-3114	하나 IB 증권	02)3771-3000
	교보증권	1544-0900	삼성증권	02)2020-8000	한국산업은행	787-4000
	굿모닝 신한증권	1600-0119	신영증권	02)2004-9000	한국투자증권	02)3276-5000
	경남은행	1588-8585	신한은행	1599-8000	한누리투자증권	02)3777-8000
	대신증권	02)769-2000	HMC 투자증권	1588-6655	한불종합금융	02)771-7711
	대우증권	1588-3322	우리은행	02)2008-5000	한양증권	02)3770-5000
	동부증권	02)369-3000	우리투자증권	02)768-7000	한화증권	02)3772-7000
	동양종합금융증권	02)3770-2000	유진투자증권	1588-6300	현대증권	02)768-0114
	리딩투자증권	02)2009-7000	유화증권	02)3770-0100	Hi 투자증권	1588-7171
	메리츠증권	02)785-6611	기업은행	1566-2566	솔로몬투자증권	02)3770-9000
	미래에셋증권	02)3774-1700	키움증권	02)3787-5000	NH 투자증권	02)2004-4114
	부국증권	02)368-9200	푸르덴셜투자증권	02)3770-7114	SK 증권	02)3773-8245
	브릿지증권	02)3779-3000	하나은행	02)2002-1111	이트레이드증권	1588-2428
	비엔지증권	02)772-1004	하나대투증권	1588-3111	LIG 투자증권	6923-7000
	IBK 투자증권	1588-0030				
4. 작성기준일	2008년 12월 12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p>각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투자설명서 본문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참조')</p> <p>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axa-im.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p>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 명 칭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종류 A-55306/종류B-55490/종류D-59488/종류C-67331/종류C2장기주책미련-7645/종류C3-78391/종류A2-79462)
-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 종 류 : 파생상품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자산운용회사 : 교보약사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KOSPI 200 지수 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펀드로서 KOSPI 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KOSPI 200 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고, 추적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운용
3. 주요 투자위험	- 「 예금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않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주식시장변동, 파생상품 투자관련 위험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 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axa-im.kr)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박찬	1971	팀장	25개	20,763억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보약사자산운용 INDEX/QUANT 운용팀(現) -운용경력 총 10년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INDEX/QUANT 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기간	설정일 이후						
	종류A (06.3.14~ 08.9.29)	종류B (06.3.21~ 08.9.29)	종류C (07.4.6~ 08.9.29)	종류e (06.8.23~ 08.9.29)	종류A2 (08.2.15~ 08.9.29)	종류C3 (08.1.16~ 08.9.29))	종류C2<장기주 책미련 >(07.11.26~ 08.9.29)
투자신탁	7.07	7.32	0.37	7.00	-18.52	-19.23	-17.27
비교지수	3.38	3.06	-1.17	3.82	-19.98	-20.34	-19.30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 100%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								
종류		A	A2	B	C	C2 <장기주택 마련>	C3	Cw	e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건별 납입금액 5억원 미만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 상기금등	건별 납입금액 5억원 이상	제한없음	관련법령에 서정하는자 격을 가진자	건별 납입금액 5억원 이상	일임형wrap 계좌	온라인가입 전용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1) (납입금액기준)	1.00	0.03	0.03	없음				0.50	
	환매수수료 1)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	0.150	0.150	0.150	0.150	0.150	0.150	0.150	0.150
		판매회사	0.600	0.000	0.000	1.400	1.000	0.200	0.000	0.140
		기타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합계	0.760	0.160	0.160	1.560	1.160	0.360	0.160	0.300
	기타비용	0.013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총보수비용비율	0.773	0.162	0.162	1.561	1.161	0.361	0.161	0.301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12.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종류C2<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비에 따라 저축계약 7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15시) 이전	오후 3시(15시) 경과 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begin{array}{ccc} & D & D+1 \\ & & \\ \text{자금 납입} & \text{---} & \text{수익증권 매입} \\ \text{(3 시이전)} & & \text{(D+1 기준가격적용)} \end{array}$ </div>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begin{array}{ccc} & D & D+1 & D+2 \\ & & & \\ \text{자금 납입} & \text{---} & \text{수익증권 매입} & \\ \text{(3 시경과후)} & & \text{(D+2 기준가격적용)} & \end{array}$ </div>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begin{array}{cccc} & D & D+1 & D+2 & D+3 \\ & & & & \\ \text{환매청구} & \text{---} & \text{기준가} & \text{---} & \text{환매대금} \\ \text{(3 시이전)} & & \text{적용} & & \text{지급} \end{array}$ </div>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begin{array}{cccc} & D & D+1 & D+2 & D+3 \\ & & & & \\ \text{환매청구} & \text{---} & \text{기준가} & \text{---} & \text{환매대금} \\ \text{(3 시경과)} & & \text{적용} & & \text{지급} \end{array}$ </div>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판매직원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종류 A-55306 / 종류B-55490 / 종류E-59488 / 종류C-67331 / 종류C2장기주택마련-7645 / 종류C3-78391 / 종류A2-79462)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3. 분류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교보약사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6. 03. 14 최초설정
 2006. 07 .03 약관변경(시가총액비중 산정기간 단축)
 2006. 07. 14 약관변경(종류 e 수익증권 신설)
 2007. 04. 04 약관변경(종류 C 수익증권 신설)
 2007. 10. 22 약관변경(종류 C2<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 신설)
 2008. 01. 15 약관변경(종류C3 수익증권 및 수익증권 Cw 수익증권 신설)
 2008. 02. 13 약관변경(종류A2 수익증권 신설)
 2008. 05. 06 약관변경(주식선물예외 투자)
 2008. 10. 01 약관변경(투자신탁명칭 및 자산운용회사명 변경)

6. 수탁고추이 (1)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

(단위:억좌,%)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08.12.11	08.06.11	07.12.11	07.06.11	06.12.11	06.06.11
수탁고	2,199	2,043	1,353	406	58	5
증가율*	7.63	50.95	233.24	602.74	960.85	

(2)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B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08.12.11	08.06.11	07.12.11	07.06.11	06.12.11	06.06.11
수탁고	6,466	7,284	6,069	3,594	2,565	766
증가율*	-11.23	20.02	68.88	40.11	234.74	

(3)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e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08.12.11	08.06.11	07.12.11	07.06.11	06.12.11
수탁고	119	94	56	21	1
증가율*	26.42	68.97	167.17	1,904.37	

(4)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12.11	08.06.11	07.12.11	07.06.11
수탁고	72	24	12	9
증가율*	195.53	105.42	27.21	

(5)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2<장기주택마련>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12.11	08.06.11	07.12.11	07.06.11
수탁고	2.7	0.6	0.0	-
증가율*				

(6)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3

연도	현재	6개월전
	08.12.11	08.06.11
수탁고	144	163
증가율*	-11.71	

(7)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2

연도	현재	6개월전
	08.12.11	08.06.11
수탁고	719	106
증가율*	580.14	

* 매 6개월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내 KOSPI 200 지수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펀드로서 KOSPI 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KOSPI 200 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ETF(상장지수펀드)등에 투자하고, 추적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운용됩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투자 자산 중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인덱스 복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고, 구성된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에 따라 정기 리밸런싱(월별)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0.50% 이상의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됩니다. 단, 인덱스 구성 종목의 변경 또는 구성종목의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로 변경 가능 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에 따른 위험 등에 노출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가격 변동이 큰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지수선물, 지수옵션 등에 투자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높은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일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종류 C2<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소유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이상의 저축을 통하여 비과세 및 근로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상 투자 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15% 이상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하 투자 하는 경우 -채권의 신용등급 허용한도가 BB등급 이하인 경우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15% 미만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채권의 신용등급 허용한도가 BBB등급 이상인 경우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60%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10% 미만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주식에 10%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채권의 신용등급 허용한도가 A등급 이상인 경우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30%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5% 미만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원금보존 추구형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 종류 C2<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상품 주요 내용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구분	주요 내용
가입시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대상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한도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음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감면세액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 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법시행령 제 80조 제5항 ^(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1)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p>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p> <p>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소득공제	<u>저축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u>
소득공제추징	<p>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보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p> <p>※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주2)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p>(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kyoboaxa-im.kr)·판매회사·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 찬	팀 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보악사자산운용 INDEX/QUANT운용팀(現) -운용경력 총 10년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INDEX/QUANT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3부.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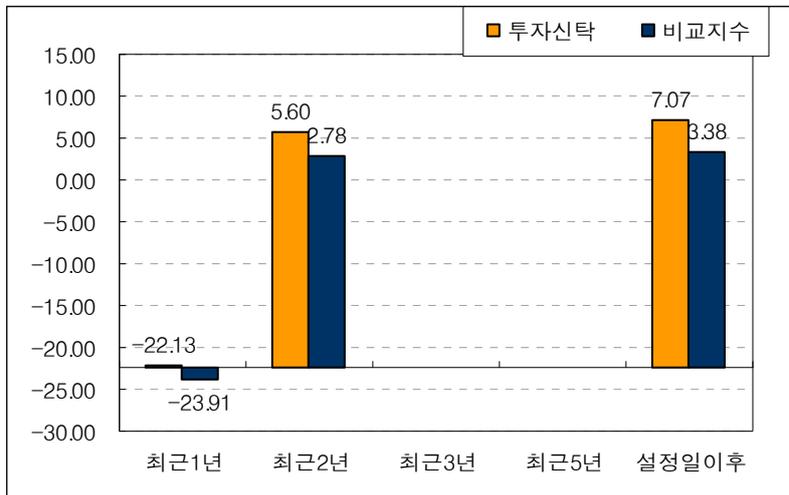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1)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일 이후
	07.9.30 ~ 08.9.29	06.9.30 ~ 08.9.29	06.3.14 ~ 08.9.29
투자신탁	-22.13	5.60	7.07
비교지수	-23.91	2.78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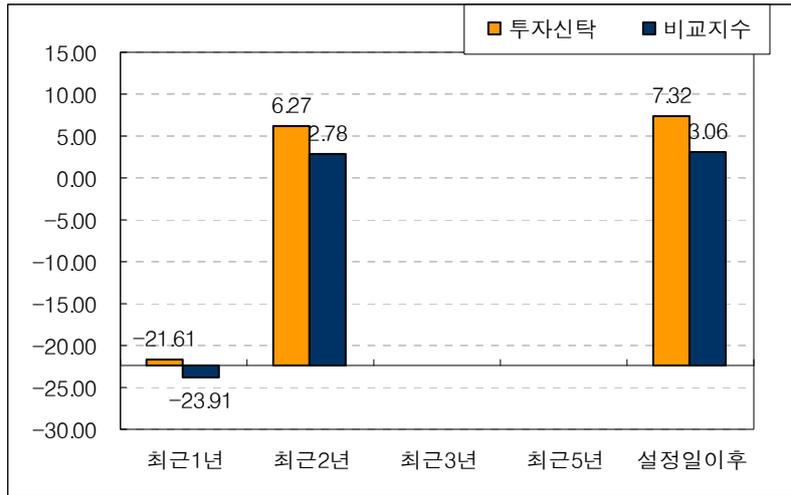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



(2)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B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일 이후
	07.9.30 ~ 08.9.29	06.9.30 ~ 08.9.29	06.3.21 ~ 08.9.29
투자신탁	-21.61	6.27	7.32
비교지수	-23.91	2.78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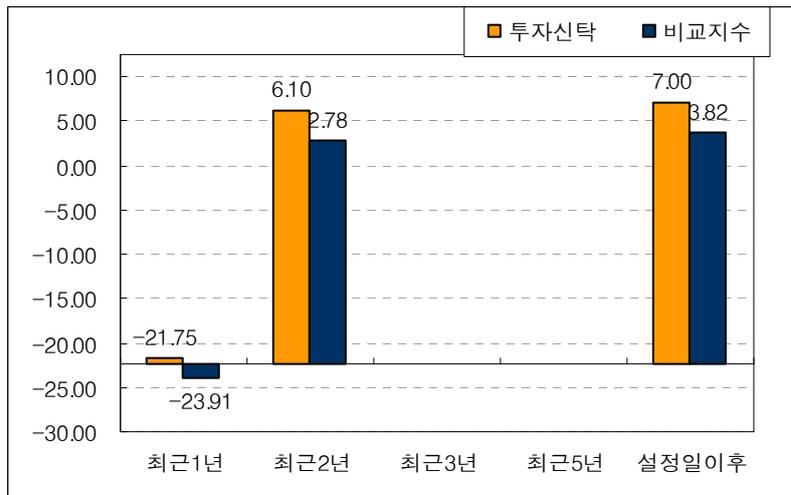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3)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종류 e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설정일이후
	07.9.30 ~ 08.9.29	06.9.30 ~ 08.9.29	06.8.23 ~ 08.9.29
투자신탁	-21.75	6.10	7.00
비교지수	-23.91	2.78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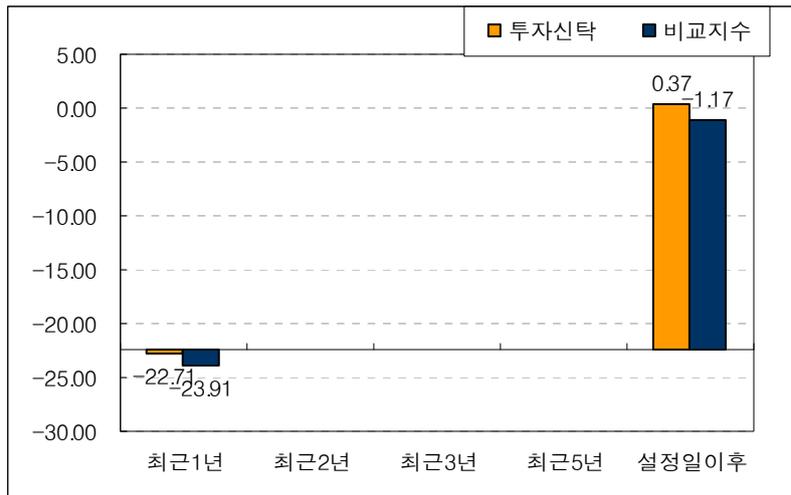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4)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종류 C

기간	최근 1 년	설정일이후
	07.9.30 ~ 08.9.29	07.4.6 ~ 08.9.29
투자신탁	-22.71	0.37
비교지수	-23.91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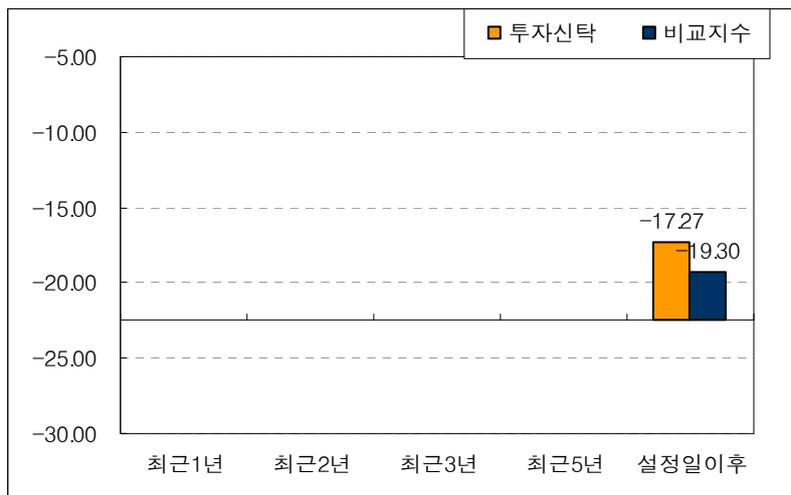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5)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기간	설정일이후
	07.11.26 ~ 08.9.29
투자신탁	-17.27
비교지수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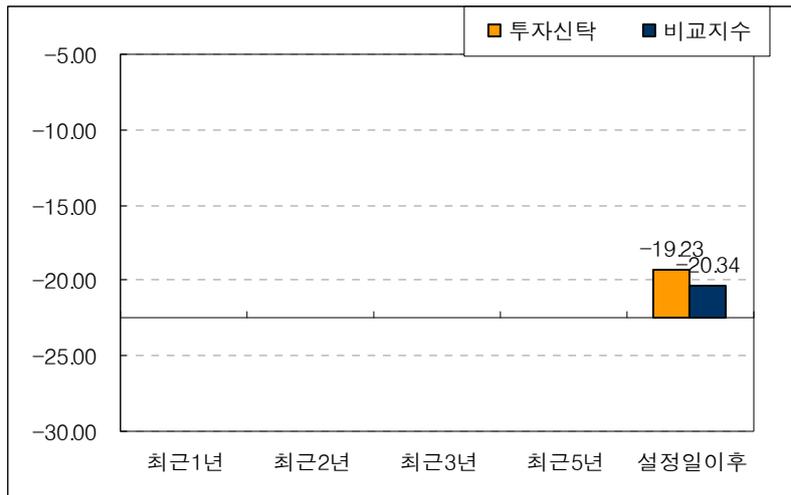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6)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종류 C3

기간	설정일이후
	08.1.16 ~ 08.9.29
투자신탁	-19.23
비교지수	-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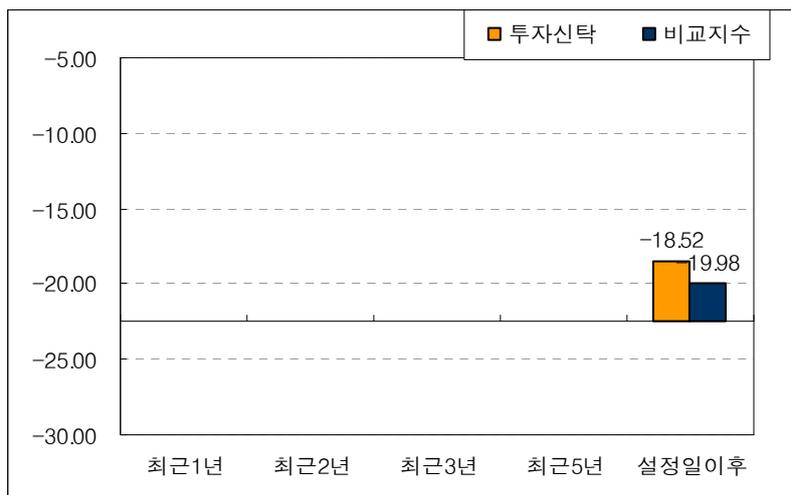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7)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2

기간	설정일 이후
	08.1.16 ~ 08.9.29
투자신탁	-18.52
비교지수	-19.98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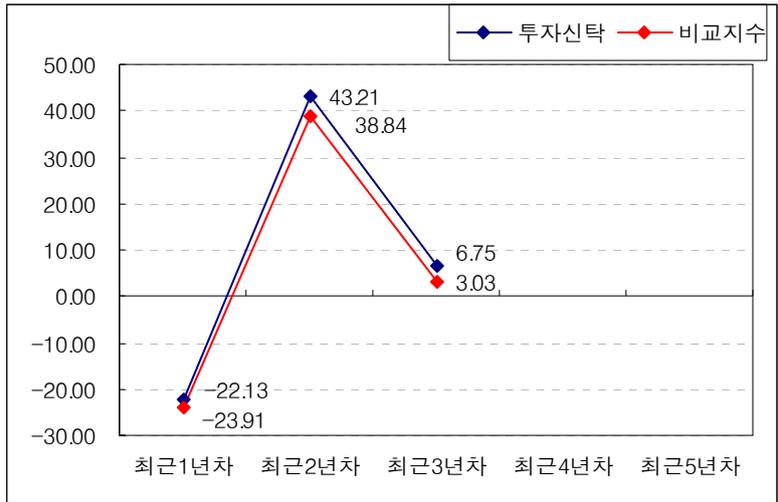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1)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07.9.30 ~ 08.9.29	06.9.30 ~ 07.9.29
투자신탁	-22.13	43.21	6.75
비교지수	-23.91	38.84	3.03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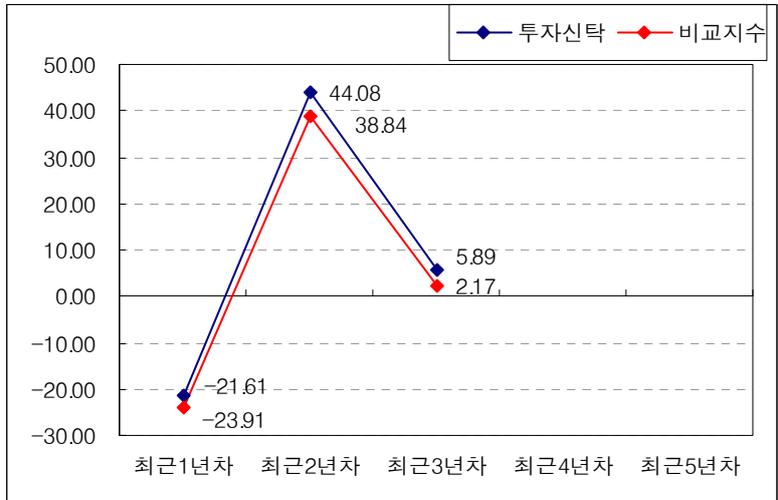
2)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2)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B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07.9.30 ~ 08.9.29	06.9.30 ~ 07.9.29	06.3.21 ~ 06.9.29
투자신탁	-21.61	44.08	5.89
비교지수	-23.91	38.84	2.17

-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3)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e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07.9.30 ~ 08.9.29	06.9.30 ~ 07.9.29
투자신탁	-21.75	43.86
비교지수	-23.91	38.84

-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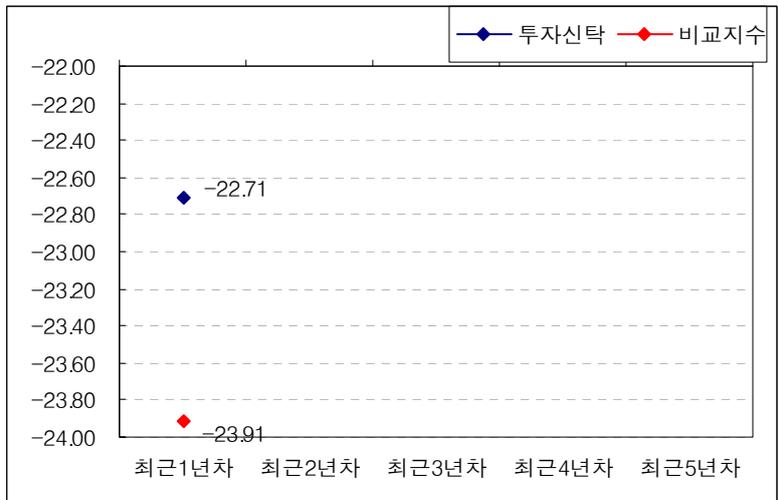


(4)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

기간	최근 1년차
	07.9.30 ~ 08.9.29
투자신탁	-22.71
비교지수	-23.91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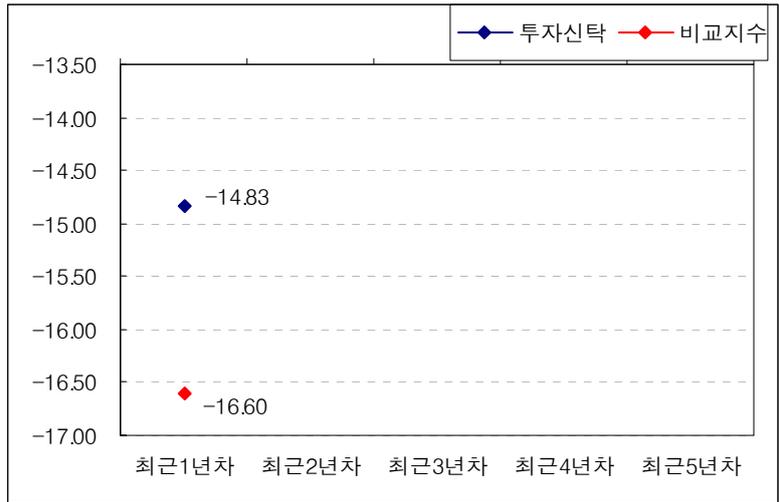


(5)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기간	최근 1년차
	07.11.26 ~ 08.9.29
투자신탁	-14.83
비교지수	-16.60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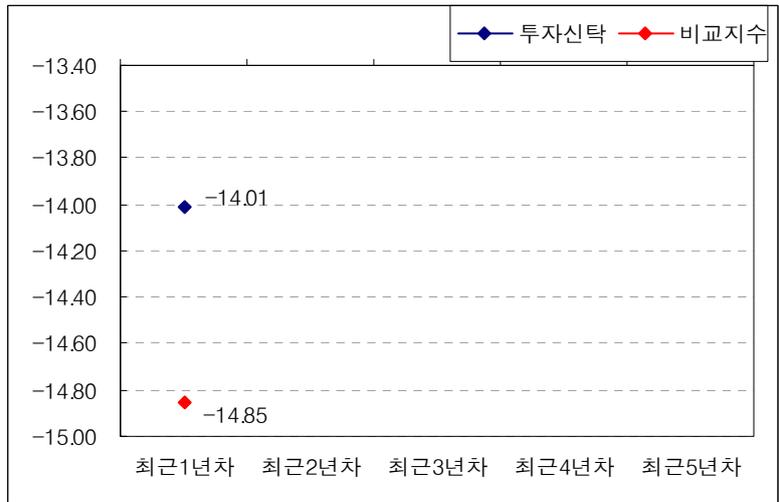
2)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6)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종류 C3

기간	최근 1 년차
	08.1.16 ~ 08.9.29
투자신탁	-14.01
비교지수	-1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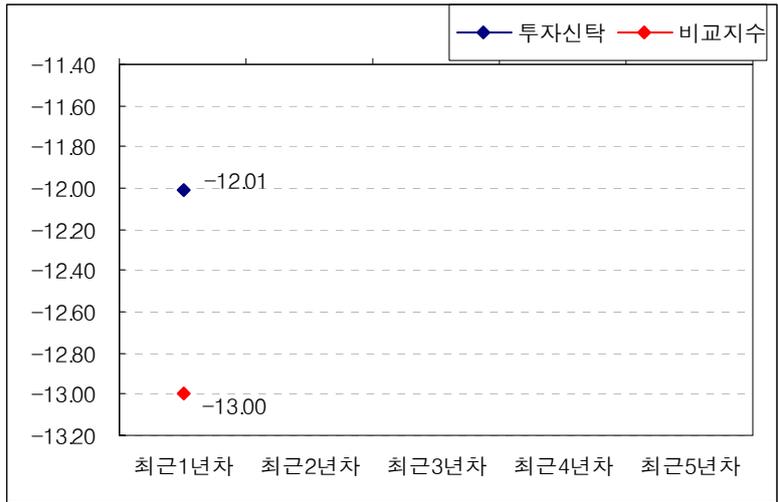
-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7)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종류 A2

기간	최근 1 년차
	08.1.16 ~ 08.9.29
투자신탁	-12.01
비교지수	-13.00

-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100%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8종의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오른쪽 표에서와 같이 상이한 보수율이 적용됩니다.

① 종류 A 수익증권 : 매 건별 납입금액 5억원 미만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② 종류 A2 수익증권 :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3%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③ 종류 B 수익증권 : 매 건별 납입금액 5억원 이상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3%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④ 종류 C 수익증권 : 제한 없음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⑤ 종류 C2<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 :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정의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한합니다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	------------------	-----

⑥ **종류 C3 수익증권** : 매 건별 납입금액 5억원 이상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⑦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⑧ **종류 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자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0%	매입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15%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종류 A	순자산총액의 0.60%	
	종류 A2	없음	
	종류 B	없음	
	종류 C	순자산총액의 1.40%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순자산총액의 1.00%	
	종류 C3	순자산총액의 0.20%	
	종류 Cw	없음	
	종류 e	순자산총액의 0.14%	
수탁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05%		사유 발생시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0.005%		
기타비용 ¹⁾	종류 A	순자산총액의 0.013%	
	종류 A2	순자산총액의 0.002%	
	종류 B	순자산총액의 0.002%	
	종류 C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C3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Cw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e	순자산총액의 0.001%	

총 보수·비용 비율	종류 A	순자산총액의 0.773%	-
	종류 A2	순자산총액의 0.162%	
	종류 B	순자산총액의 0.162%	
	종류 C	순자산총액의 1.561%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순자산총액의 1.161%	
	종류 C3	순자산총액의 0.361%	
	종류 Cw	순자산총액의 0.161%	
	종류 e	순자산총액의 0.301%	

주1)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7.3.14~2008.3.13)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①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②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다음 비용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만원)

구 분	선취 수수료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0	8	25	43	99
종류 A2	0.3	2	5	9	21
종류 B	0.3	2	5	9	21
종류 C	-	16	50	88	201
종류 C2 <장기주택 마련>	-	16	52	91	206
종류 C3	-	4	12	20	47
종류 Cw	-	2	5	9	21
종류 e	5	3	10	17	29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2008년 12월 현재)>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14.0%	14.0%	-
주민세	1.4%	-	-
계	15.4%	14.0%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Class C2<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등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0%	가입불가	가입불가
주민세	0%	가입불가	가입불가
계	0%	가입불가	가입불가

다만,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세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러하니 아닙니다.

(주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2008년 12월 현재)>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14.0%	가입불가	가입불가
주민세	1.4%	가입불가	가입불가
계	15.4%	가입불가	가입불가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후3시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 합니다.

2.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 방법>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 합니다.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

이 가능합니다.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다음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
- 종류 A2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B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2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w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e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

다만 이 투자신탁의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신고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및 새로운 간접투자증권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관련 법령등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이익분배금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 이익 등의 분배 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분배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합니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펀드에 편입되는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KOSPI 2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로써 KOSPI 200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과 유사하게 구성되며 추적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운용됩니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 2)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 200 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3) 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 4)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투자 자산 중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인덱스 복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고, 구성된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에 따라 정기 리밸런싱(월별)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0.50% 이상의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됩니다. 단, 인덱스 구성 종목의 변경 또는 구성종목의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로 변경 가능 합니다.

※ 용어설명

- 1) 추적오차(Tracking Error) : [인덱스복제포트폴리오 수익률 - KOSPI 200 지수 수익률]의 절대값
- 2) 상장지수펀드(ETF) : KOSPI 200 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 할 수 있음
- 3) 차익거래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는 그 상품을 매도해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2.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10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

			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	채권	4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어음	40%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수익증권등	5%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이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⑦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초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이하	
⑨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⑩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p> <p>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②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③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p> <p>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이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u>투자증권등 자산</u> 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도 등의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거래증권사 및 선물 중개사에 대한 평가 및 선정은 분기 단위로 하며, 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선정>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

투자증권 거래	<p>1)일반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서치/프리젠테이션능력, 정보제공/영업능력,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p> <p>2)Cyber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p> <p>3)일반채권 매매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조흥,외환,우리,산업,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p> <p>4)신규 발행 채권 인수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p> <p>5)외화표시채권 매매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p>
장내 파생상품 거래	<p>1)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p> <p>2)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p>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 사항

<수익증권 매입시
기준가격 등>

- (1)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1)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합니다.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 사항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등>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

시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증권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1) 또는 (2)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1)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2)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자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3)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신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신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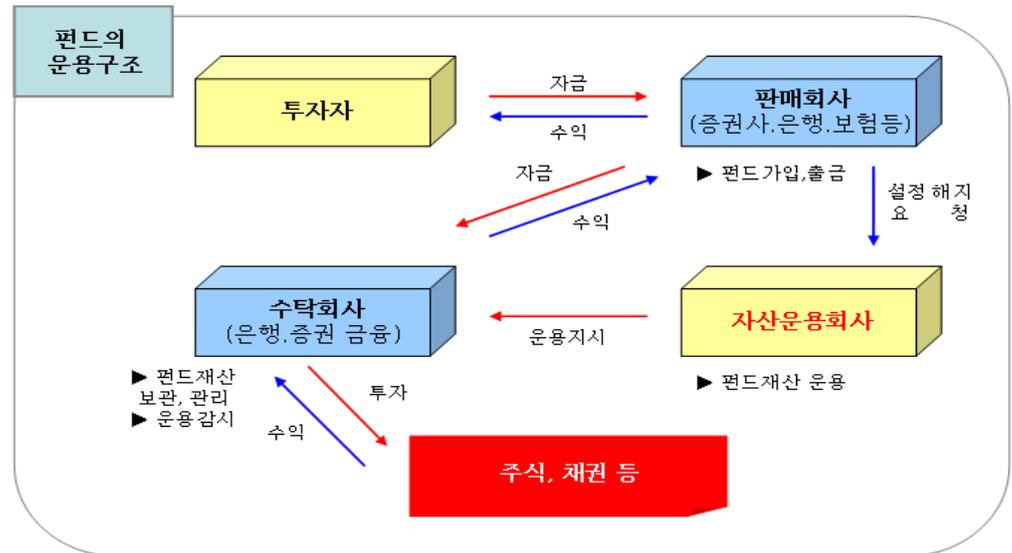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 자산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12층 ☎ 02-767-9600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

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에이브레인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임은 교보약사자산운용(주)에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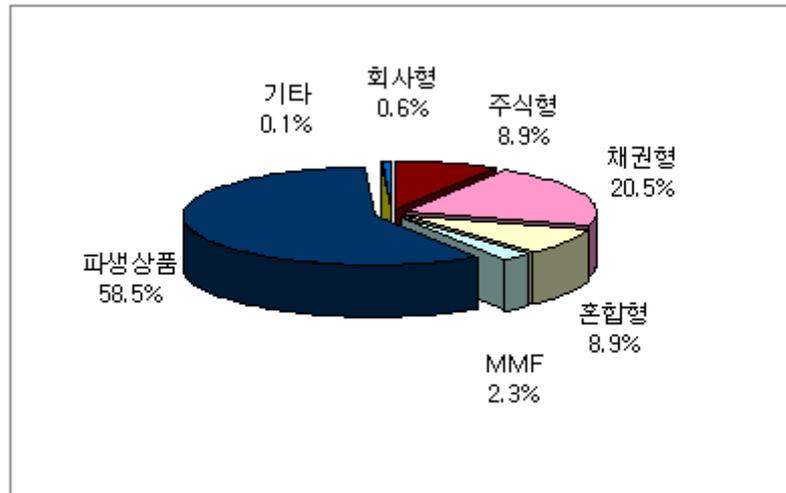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08.03.31	'07.03.31	항 목	'08.03.31	'07.03.31
유동자산	49,688	51,075	영업수익	15,907	13,203
고정자산	6,588	4,164	영업비용	10,500	9,524
자산총계	56,276	55,239	영업이익	5,407	3,679
유동부채	1,175	2,049	영업외수익	54	3,212
고정부채	259	149	영업외비용	9	-
부채총계	1,434	2,199	경상이익	5,452	6,891
자본금	30,000	3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4,842	23,040	특별손실	-	-
자본조정금	-	-	세전순이익	5,452	6,891
자본총계	54,842	53,040	당기순이익	3,902	4,948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12월 11일 기준 (단위 : 억좌)

종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파생상품	기타	회사형	합계
수탁고	4,058	9,336	4,054	1,065	26,605	50	283	45,451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박찬	1971	팀장	25개	20,763억	-고려대 경영학 학사 -운용경력 총10년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INDEX/QUANT운용팀 이 담당하며,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교보생명보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1588-1001	www.kyobo.co.kr
교보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1544-0900	www.iprovest.com
굿모닝신한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1600-0119	www.goodi.com
경남은행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1588-8585	www.kyongnambank.co.kr
대신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769-2000	www.daishin.co.kr
대우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1588-3322	www.bestez.com
하나대투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02)3771-7114	www.daetoo.com
동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02)369-3000	www.winnet.co.kr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 185 02)3770-2000	www.myasset.com
리딩투자증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02)2009-7000	www.leadingkorea.com
메리츠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02)785-6611	www.imeritz.com
미래에셋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02)3774-1700	www.miraeasset.com
부국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02)368-9200	www.bookook.co.kr
브릿지증권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3 가 222 02)3779-3000	www.bridgefn.com
비엔지증권	서울 중구 총무로 1 가 25-5 02)772-1004	www.bngsec.com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02)787-4000	www.kdb.co.kr
삼성생명보험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 1588-3114	www.samsunglife.com
삼성증권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 6 02)2020-8000	www.samsungfn.com
유진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1588-6300	www.seoulstock.co.kr
신영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www.shinyoung.com

	02)2004-9000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1599-8000	www.shinhan.com
HMC 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 동화빌딩 1588-6655	www.hmcib.co.kr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 지 02)2008-5000	www.wooribank.com
우리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02)768-7000	www.wooriwm.com
유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02)3770-0100	www.yhs.co.kr
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1566-2566	www.kiupbank.co.kr
키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02)3787-5000	www.kiwoom.com
푸르덴셜투자증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02)3770-7114	www.pruceber.com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02)2002-1111	www.hanabank.co.kr
하나 IB 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02)3771-3000	www.clickhana.co.kr
한국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5000	www.hantutams.com
한누리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02)3777-8000	www.hannuri.co.kr
한불종합금융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 02)771-7711	www.kfbc.co.kr
한양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02)3770-5000	www.hygood.co.kr
한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02)3772-7000	www.koreastock.co.kr
현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02)768-0114	www.youfirst.co.kr
Hi 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1588-7171	www.hi-ib.com
솔로몬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02)3770-9000	www.kgieworld.co.kr
NH 투자증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 02)2004-4114	www.sejongiz.com
SK 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02)3773-8245	www.priden.com
이트레이드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 빌딩 8층 1588-2428	www.etrade.co.kr
LIG 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빌딩 3층 02)6923-7000	www.ligstock.com
IBK 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60번지 1588-0030	www.ibks.com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 및 책임>

(의무)

-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 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02)2002-1111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bank.co.kr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의무 및 책임>

(의무)

-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에이브레인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02)2014-20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abrain.co.kr

2. 주요 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3.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연혁
한국채권평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설립일: 2000.5.29 등록일: 2000.7.1
KIS채권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02)3215-1420	설립일: 2000.6.20 등록일: 2000.7.1
나이스채권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번지 한섬빌딩 6층 02)398-3900	설립일: 2000.6.16 등록일: 2000.7.1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1)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소집 주체 및 통지>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기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axa-im.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정기공시 사항 및 보고서는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약관의 변경>

(1)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의 의결(아래 ①~⑥에 해당하는 사항)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수탁회사의 변경
- ③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

(3)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4) 수익자가 (2)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의결권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kyoboaxa-im.kr)·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 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증권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수탁고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 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